

광고신도시 특혜분양 헌법소원청구

- 청구인 모집과 소송비 분담의 건 -

- 대응형태 : 헌법소원청구

- 활동주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청구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12의2호
-
- 청구사유 : 기업 특혜 분양에 따른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되어야 함에도 일반 기업 연구원에 공급하겠다고 규칙을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배, 삼성 특혜, 기업 특혜를 법적으로 조장,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보장 축소

- 청구자격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② 수도권에 거주한 자
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12의2호에 해당하는 자
※ 2p.특별공급자격 요건 참조

- 요청사항 : ① 청구자격 요건에 맞는 자 헌법소원청구인으로 참여
② 소송 참여단체는 소송비 10만원 요청 (총소송비 100만원)
※ 계좌 : 국민은행 264401-04-178890 (경기환경운동연합)
② 10월 24일(금)까지 소송청구인과 소송비용 분담금 보내주세요.

메모 :

- 청구일정과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의 검토를 요청하겠으나 우선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이 전제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힘드시겠지만 청구인 모집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특별공급 자격 요건

특별공급 자격 요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② 수도권에 거주

※ 주택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 수도권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로서 아래 각 호를 충족하는 자

호	대 상	관련 규정	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의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의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8

비고	대상	관련 규정	호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9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9
10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0
11	•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11
12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12
13	•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		13